

GANGJIN 

Web Contents




목차

목차	2
민원서식	3
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중단 신고	3
첨부파일(1)	3

[민원사무처리](#)[민원서식](#)

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중단 신고

작성일 2020.09.15 10:44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194

첨부파일(1)  12_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중단 신고.hwp 90 hit/19.0 KB [다운로드](#) [미리보기](#)

1. 사무안내

집단급식소설치·운영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
2. 신청대상자: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

3. 신청방법: 방문

4. 관련법규

- 식품위생법 88조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96항

5. 수수료: 없음

6. 구비서류: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증(분실의 경우는 사유서)

7. 처리기간 및 제출처: 즉시(3시간 이내) / 민원봉사과

[목록](#)

GANGJIN

Web Contents

